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농산물 가공사업장의 품질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지도사 1명)을 증원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고위험식품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의 신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와 협의로 농·축산물 영양정보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해양수산부 소속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 위임하였던 비료의 품질 검사에 관한 사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비료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농촌진흥청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려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양파, 마늘 및 엽근채소 연구강화를 위해 파속채소연구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인력 2명(연구관 2명)을 종전의 직급(연구사 2명)으로 각각 환원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제1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약의 품질검사·유통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부정·불량 농약 단속에 관한 사항

제28조 중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시설원예연구소·사과연구소·배연구소 및 감귤연구소”를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시설원예연구소·사과연구소·배연구소·감귤연구소 및 파속채소연구소”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2022년 4월 30일”을 “2024년 4월 30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46”을 “345”로 하고, 일반직 계 “345”를 “344”로 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6”을 “45”로 하고, 농업주사보 “10”을 “9”로 하며, 농촌지도사 “24”를 “25”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49”를 “348”로 하고, 일반직 계 “348”을 “347”로 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8”을 “47”로 하고, 농업주사보 “9”를 “8”로 하며, 농촌지도사 “24”를 “25”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25”를 각각 “527”로 하고, 공업서기 “11”을 “1

2”로 하며, 공업서기보 “3”을 “4”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27”을 각각 “529”로 하고, 공업서기 “12”를 “13”으로 하며, 공업서기보 “3”을 “4”로 하고, 농업연구관 “81”을 “79”로 하며, 농업연구사 “246”을 “248”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7”을 각각 “340”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33”을 “336”으로 한다.

별표 10 중 2. 제41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4월 30일) “2022년 4월 30일”을 “2024년 4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비료의 품질 검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2명(6급 1명, 7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구정책국) ① ~ ⑤ (생략)	제7조(연구정책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⑦ 농자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u>농약·비료의 품질관리·유통관리·표준규격 설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1. <u>농약의 품질검사·유통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8. <u>부정·불량 농약·비료 단속에 관한 사항</u>	8. <u>부정·불량 농약 단속에 관한 사항</u>
9. ~ 13. 삭 제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⑧·⑨ (생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28조(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소속으로 <u>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시설원예연구소·사과연구소·배연구소 및 감귤연구소</u> 를 두고, 각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8조(연구소) ----- ----- <u>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시설원예연구소·사과연구소·배연구소·감귤연구소 및 파속채소연구소</u> ----- ----- -----.

제41조(한시정원) ① (생략)	제41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축산물 영양정보 구축 및 식품영양정보 통합·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년 4월 30일까지</u>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며, 별표 10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② ----- ----- ----- ----- ----- <u>2024년 4월 30</u> <u>일</u>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46</u>	<u>345</u>	-1
·	·	·	
·	·	·	
일반직 계	<u>345</u>	<u>344</u>	-1
·	·	·	
·	·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식품위생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u>46</u>	<u>45</u>	-1
·	·	·	
·	·	·	
농업주사보	<u>10</u>	<u>9</u>	-1
·	·	·	
·	·	·	
농촌지도사	<u>24</u>	<u>25</u>	+1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49</u>	<u>348</u>	-1
•	•	•	
•	•	•	
일반직 계	<u>348</u>	<u>347</u>	-1
•	•	•	
•	•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식품위생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u>48</u>	<u>47</u>	-1
•	•	•	
•	•	•	
농업주사보	<u>9</u>	<u>8</u>	-1
•	•	•	
•	•	•	
농촌지도사	<u>24</u>	<u>25</u>	+1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25</u>	<u>527</u>	+2
일반직 계	<u>525</u>	<u>527</u>	+2
•	•	•	
•	•	•	
•	•	•	
•	•	•	
공업서기	<u>11</u>	<u>12</u>	+1
•	•	•	
•	•	•	
•	•	•	
•	•	•	
공업서기보	<u>3</u>	<u>4</u>	+1
•	•	•	
•	•	•	
•	•	•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27</u>	<u>529</u>	+2
일반직 계	<u>527</u>	<u>529</u>	+2
·	·	·	
·	·	·	
·	·	·	
공업서기	<u>12</u>	<u>13</u>	+1
·	·	·	
·	·	·	
공업서기보	<u>3</u>	<u>4</u>	<u>+1</u>
·	·	·	
·	·	·	
·	·	·	
농업연구관	<u>81</u>	<u>79</u>	-2
·	·	·	
·	·	·	
농업연구사	<u>246</u>	<u>248</u>	+2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37</u>	<u>340</u>	+3
일반직 계	<u>337</u>	<u>340</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33</u>	<u>336</u>	+3
·	·	·	